

## 19. 공동주택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정정

건설교통부고시제1999-178호 1999. 6. 16.

건설교통부고시 제1999-143호('99. 5. 17.)로 고시한 바 있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정정·고시하며, 온수온돌 시공기준(건설교통부고시 제396호, 1987. 8. 19.) 및 지하층 설치구역 공고(건설교통부공고 제1995-346호 '95. 11. 21.)를 폐지 고시합니다.

〈 공동주택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정정 〉

-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중 “3.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, 건축부문, ①외피의 열관류율(Kcal/m<sup>2</sup>h℃), 천장(지붕) 및 창의 배점(b)”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“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작성요령”중 3. 창면적비에 3)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

· 정정(3.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, 건축부문, ①외피의 열관류율)

<당 초>

천장 (지붕)	1.25	0.23미만	0.23~0.26	0.26~0.29	0.29~0.32	0.32~0.35	(3)
		0.34미만	0.34~0.37	0.37~0.41	0.41~0.45	0.41~0.45	
		0.45미만	0.45~0.50	0.50~0.55	0.55~0.60	0.60~0.65	

창	3.0	2.5미만	2.5~2.6	2.6~2.7	2.7~2.8	2.8~2.9	(5)
		2.8미만	2.8~2.9	2.9~3.0	2.9~3.0	3.0~3.1	
		3.5미만	3.5~4.0	4.0~4.5	4.0~4.5	4.5~5.0	

<정정후>

천장 (지붕)	1.25	0.23미만	0.23~0.26	0.26~0.29	0.29~0.32	0.32~0.35	(3)
		0.33미만	0.33~0.36	0.36~0.39	0.39~0.42	0.42~0.45	
		0.45미만	0.45~0.50	0.50~0.55	0.55~0.60	0.60~0.65	

창	3.0	2.1미만	2.1~2.3	2.3~2.5	2.5~2.7	2.7~2.9	(5)
		2.3미만	2.3~2.5	2.5~2.7	2.7~2.9	2.9~3.1	
		2.6미만	2.6~3.2	3.2~3.8	3.8~4.4	4.4~5.0	

주택회보